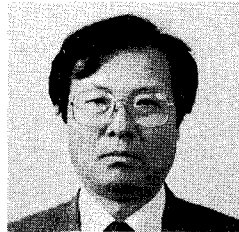


“

근래 우리의 낙농산업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산업으로의 산업에는 해결되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중 중요한 하나는 젖소질병의 예방과 조기진단, 치료를 위한 진료조직과 기술의 현대화(선진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래 우리의 낙농산업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산업으로의 산업에는 해결되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중 중요한 하나는 젖소질병의 예방과 조기진단, 치료를 위한 진료조직과 기술의 현대화(선진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의 하나로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시도하고 있는 젖소 계약진료제에 관한 사항을 요약, 설명하고자 한다.

젖소 계약진료의 내용과 방법



김 학 재

서울우유 진료과장

“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젖소진료체계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때 그때의 낙농가의 진료요청에 따른 치료목적의 진료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예방 진료는 등한시 되고 있다. 경제성 동물인 젖소가 일단 발병하면 직접, 간접적인 손실이 따르게 마련이므로 치료보다는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일 것이다.”

1. 현행진료체계의 문제점

가. 예방진료가 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젖소진료체계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때 그때의 낙농가의 진료요청에 따른 치료목적의 진료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예방 진료는 등한시 되고 있다. 경제성 동물인 젖소가 일단 발병하면 직접, 간접적인 손실이 따르게 마련이므로 치료보다는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일 것이다. 그러나 현행 진료체계상 관련업무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수의사의 참여와 조력의 기회는 거의 배제되고 질병예방활동은 주로 낙농인 자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성과가 극히 제한적이고 미미한 실정이며 예방활동의 부진으로 인한 손실은 막대하리라 추정된다.

나. 진료비가 높고 치료율이 낮다.

수의사의 진료활동은 낙농인의 진료요청에 따른 치료목적의 진료에 한정되어 계획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수 없어 한두 한두의 젖소진료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자연히 단위진료비를 높게 된다. 진료비가 비싼 것은 자연적으로 낙농인으로 하여금 수의사와의 진료를 기피하고 자기진료에 의존하는 성향을 부채질하게 되며 따라서 치료효율(치료율)을 지극히 나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말은 발병 초기에 정확한 진료(진단, 치료)가 되지 않아 약품의 오용과 남용이 될 뿐만 아니라 중증의 상태에 이르러서야 수의사를 부르게 되므로 치료율이 나쁘게 된다는 것이다.

다. 원활한 진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동물병원에는 1명의 수의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비교적 많은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동물병원 운영 방법은 위급한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 신속히 응급진료를 못하여 치료가능한 멸절한 소를 도태케 하는 등 불필요한 손실을 보는 경우를 종종 당하게 된다.

1명의 수의사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많은 운영비가 소요되어 진료비의 상승을 부채질하게 되고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진료기구중에 비싼 정밀, 첨단기구의 이용이 어렵고 새로운 진료술의 확대, 보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문제에 따른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손실을 입는 사람은 해당수의사와 낙농가가 될 것이다.

2. 외국의 예

일본의 젖소진료체계는 조직, 운영에 있어 우리의 진료체계를 개선하는데 하나의 표본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그내용(가축공제사업)을 요약, 소개하고자 한다.

가. 법률적 배경

일본은 패전직후인 1947년에 이미 파쇄된 농업을 재건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는데 동 농업재해보상법에 의한 가축공제사업의 일환으로 젖소진료를 국가적 사업으로 행하여 오고 있다.

나. 가축공제사업의 내용

각종 재난으로부터 양축가를 보호하여 축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재난에 의한 손실을 보전하여주는 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1) 손실보전 : 도난이나 화재등 사고로 젖소를 잃었을때는 해당 젖소의 공제금(보험금과 같음)을 받게되며 질병이 걸렸을때는 일정한도내의 무료진료를 받을수 있으며 또한 전염병의 예방에 필요한 약품들의 지원을 받는다.

(2) 재원(비용) : 가축공제에 필요한 재원을 공제에 가입한 농가와 정부가 각각 반반씩 부담한다. 1987년도에 일본정부가 부담한 국고보조금은 약 100억엔으로 한화로 환산하면 약 500억원이 된다고 한다.

(3) 업무 주체 : 가축공제시험업무는 공제에 가입한 농가가 만든 농업공제조합이 수행한다. 각조합은 적게는 4-5명, 많은 곳은 10여명의 수의사로 구성된 공제진료소를 지역별로 운영하여 젖소진료에 만전을 기한다. 각 진료소는 각종 정밀진료기구를 활용하고 있으며 기술정보의 상호 원활한 교환으로 상당한 진료술의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다. 현황

일본의 젖소진료사업은 곧 가축공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가축공제 가입율은 전국적으로는 86%, 낙농지대인 북해도(후카이도)는 99%가 된다고 한다.



낙농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정책적, 기술적인 발전을 이룩하여야 할 것으로 진료체계의 개선이라는 과제가 그중의 하나임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젖소 계약진료란 그 해결방안으로 완벽하지는 못하나마 현재의 우리 여건으로는
최선의 방책으로 생각되어지며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의 젖소 진료체계로 정착 될 것으로 믿는다.



라. 가축공제사업의 문제점

우수한 조직과 시설로 기술적인면에서는 가히 완벽하다고 할 수 있으나 운영면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예방진료의 결여라고 하겠다. 경제성동물인 젖소(낙농)에서 예방진료가 빠져있다는 것은 낙농생산성의 극대화라는 진료업무의 최고목표달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은 가축공제사업이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 바로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개선과제로 삼고 있는 사항이다.

3. 젖소 계약진료

이미 제기한바와 같이 우리의 젖소 진료체계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젖소 계약진료(이하 계약진료라 함)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이 구체적으로 진료체계를 개선하고자 마련한 방안(아직은 시안 임)으로 '89년 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가. 계약진료 가입방법

계약진료에의 참여여부는 순전히 낙농가(조합원)의 의사에 의하며 계약진료약정서에 의한 계약에 의해 시행되고 계약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한다.

나. 계약진료의 목적(효과)

(1) 젖소 공태기간의 단축 : 번식과 관련된 일체의 예방진료로 공태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킴

(2) 진료비의 인하 : 현행 진료비의 반수준으로 진료비를 인하 함.

(3) 조기진단과 치료 : 진료비의 인화로 부담없이 수의사에 진료를 의뢰할 수 있어 그에따른 치료율을 높인다.

(4) 질병의 예방과 치료등에 관한 상세한 지도 : 수의사가 질병예방과 조기진단및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계약자인 낙농가에 지도케하여 질병의 예방과 조기치료를 낙농가의 경제적손실을 최소화한다.

다. 수의사의 진료 의무

(1) 목장별(계약 낙농가)정기적으로 진료

1일 평균 남유량	진료회수	비 고
1일 남유량 300kg 이하	20일에 1회	최소 의무 진료회수 임
1일 남유량 600kg 이하	15일에 1회	최소 의무 진료회수 임
1일 남유량 600kg 이상	10일에 1회	최소 의무 진료회수 임

(2) 난산과 유열을 제외한 번식에 관련된 모든 질병의 진단과 치료 : 난소낭종, 난포발육부전, 영구황체, 자궁내막염, 자궁세척, 유산산처치, 자궁축농증 등등 모든 번식관계질병의 진단과 치료시약품대를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고 수의사가 책임짐.

(3) 유방염 검사와 지도 : 유방염의 예방에 관한 지도와 검사(감수성검사 포함)는 별도의 진료비 없이 수의사가 책임짐

(4) 질병의 예방과 조기진단및 자가치료법의 지도

(5) 일반질병 {상기 "(2)"항 "및"(3)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질병을 말함의 진단 치료비는 약정서에 명기된 진료비를 준수함 (약품대를 포함함. 현행진료비의 1/2수준 임)

라. 계약진료에 가입한 낙농가의 의무 사항

- (1) 총유대의 2%를 계약진료비로 지불해야 함 (유대공제)
- (2) "상기(5)"항의 진료시 진료비 지불(유대공제)
- (3) 진료업무에 대한 협조(예 : 질병예방활동)

4. 문제점과 현황

일본과 같은 정부의 재정적, 법률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진료를 실행하는데에는 여러문제가 있음이 그간의 경험에서 입증 되었다. 그중에서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는 계약진료의 주체인 낙농가와 수의사의 그릇된 고정 관념에의 집착이라 하겠다. 즉 젖소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만을 수의사의 직분으로 생각한다는 것과 의료보험과 관련하여 정부나 관련·단체의 지원(2중 의료보험이나 일본의 가축공제의 예)을 염두에 둔 낙농가와 안일한 현재

의 진료체계에 안주하려는 일부수의사의 사고(思考)가 바로 그것으로 빠른 시일내에 계약진료를 정착시키는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그이외에도 다수의 수의사가 합동으로 진료가 가능한 종합진료소 개설의 어려움등 여러문제가 있으나 2년여의 시범적인 시행결과는 효과와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계약진료에 가입하는 낙농가가 날로 증가되고 있음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5. 결어

낙농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정책적, 기술적인 발전을 이룩하여야 할 것으로 진료체계의 개선이라는 과제가 그중의 하나임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젖소 계약진료란 그 해결방안으로 완벽하지는 못하나마 현재의 우리 여건으로는 최선의 방책으로 생각되어지며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의 젖소 진료체계로 정착 될 것으로 믿는다. 바램이 있다면 계약진료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관련기관의 정책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관련 당사자 모두의 노력으로 우리의 낙농산업이 꽃을 피울날이 올 것이라 확신을 갖고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